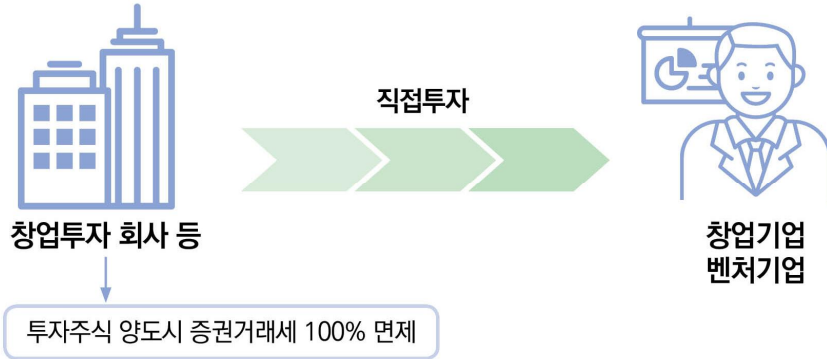


벤처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 등

### 3-13. 증권거래세 면제



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



2편 [창업단계 조세지원]

#### 지원 대상

- ①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농식품투자조합, 창업·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,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(상장에 한한다)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
-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(조합)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(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)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

#### 지원 내용

-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% 면제

#### 유의사항

-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
- 농어촌특별세 비과세

#### 절차 및 제출서류

-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
#### 관련 법령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7조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5조